

보도시점 4.20.(월) 석간 < 4.20.(월) 06:00 >

지역 중소기업 혁신, '기술인력 확보'부터 지원한다

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기술인력 채용지원 시범사업 추진

- 4월 20일(월)부터 5월 6일(수)까지 신청 접수
-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바우처 지원, 채용 부담 완화 및 기술역량 내재화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, 기업이 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'기술인력 채용지원'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.

그간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, 품질개선,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.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적합한 인재 확보의 한계와 채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.

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, 중소기업이 민간 전문기관(채용대행·헤드헌팅)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. 단순 채용 지원을 넘어, 기업 내부에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.

기업이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대행(헤드헌팅) 업체를 통해 신규 채용하고,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채용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. 총 지원 규모는 10억 원이며, 정부지원 비율은 75%이다.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5~10%p의 우대지원이 추가 적용된다.

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“지역 중소기업이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, 내부 기술역량이 축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세부 내용은 4월 20일(월) 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과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0일(월)부터 5월 6일(수)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 자세한 지원요건과 절차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(044-204-7588)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(055-751-9523)에 문의하면 된다.

담당 부서	지역기업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윤석배 (044-204-7570)
	지역혁신정책과	담당자	주무관	현승재 (044-204-7588)

□ **사업목적**

-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인력 채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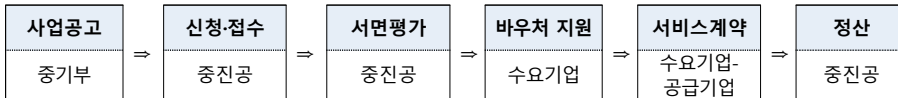
□ **사업내용**

- 지원대상 : 기술인력의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중소기업
- 지원내용 : 채용대행(헤드헌팅)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매칭(소개)수수료의 일부를 지원

채용지원 사업 기술인력 요건

- ① 자연계(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)분야 학사 이상인 자
- ②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
- ③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(3년제는 1년 이상)
-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
- 지원금액 : 기업당 10백만원 한도(정부지원금 기준)
- 보조율 : 75~85%(농어촌 인구감소지역 (우대) +5%p, (특별) +10%p)
- 추진절차



- 공급기업 :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
- 채용증빙 : 고용유지(3개월) 후 공급기업은 증빙서류 일체 제출 필요

채용 증빙서류	① 채용비용 관련 계약서 / ② 채용비용 관련 세금계산서(청구) / ③ 자부담분 및 부가가치세 입금 확인 서류 /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월평균 보수 표시) / ⑤ 해당 인원의 근로계약서 / ⑥ 해당 인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(최근 1년) / ⑦ 기술인력 증빙(졸업증명서,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)
----------------	--